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464
------	-----

제안년월일 : 2019년 3월 4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0번 및 정지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78번을 심사한 결과 두 안건 중 일부 수정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하여 두 안건을 병합심의하여 대안을 제안할 것을 의결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안번호 290번의 일부 안을 삭제하거나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동물보호와 복지 본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반려동물놀이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공원에 설치가 불가한 바 시장에게 적극적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원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존재함.

3. 대안의 주요 내용

-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0번 중 맹견의 정의조항 및 맹견의 출입장소에 대한 규정 등을 반영하고 정지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78번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수정함.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맹견”이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맹견의 관리)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안(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3. ~ 9. (생 략)</p> <p>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u>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u>구청장이</u>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u>"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u></p> <p>3.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의무) ① ----- ----- <u>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u>-----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대안(안)
<p>제2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u>다른 장애인복지시설</u></p> <p>제2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